

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

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 및 보호자용



1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

- ▶ **[필요성]**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 등은 **감염위험(집단생활)과 중증위험(고령층, 기저질환 등)**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.
- ▶ **[효과성]**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은 기존 단가백신에 비해 모두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.
- ▶ **[안전성]**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접종 시 안전성은 기존 단가백신과 유사합니다.

2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

- ▶ **[접종대상]**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자(18세 이상)
- ▶ **[접종간격]**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후 접종
* 확진자의 경우,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증상이 호전되면 접종 가능 (자연면역 고려하여 3개월 후로 연기도 가능)
- ▶ **[접종방법]** 자체접종(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), 방문접종(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)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
*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
- ▶ **[접종백신]**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(mRNA 백신)
BA.1 기반(모더나, 화이자), BA.4/5 기반(화이자)
* 유전자재조합 백신(노바백스, 스카이코비원)도 보조적으로 활용

3 동절기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

- ▶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**본인 동의**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
- ▶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**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***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. (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같음)
※ 예진표 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(노인복지법 근거)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,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
* 보호자 :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된 '보호자' 정의 준용

4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

- ▶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고, 건강취약계층인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의 **감염 및 중증예방**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.
- ▶ **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분들의 보호**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에 꼭 동참해 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.